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ustralia: New MAP guidelines, arbitration arrangements for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June11., 2020\)](#)

호주: 국제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규정 및 상호합의절차 개정 지침 발표

June 11, 2020

호주 과세당국(이하 "ATO")은 BEPS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약"(이하 "MLI")¹에 따라 개정된 호주 조세조약 상 일부 수정된(또는 향후 수정 예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과적인 국제조세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상호합의절차(이하 "MAP")²와 중재규정에 관한 개정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관련 내용(MAP 절차, 조세조약상 분쟁해결, MAP 및 중재규정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등)은 ATO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MAP 개정 지침 주요 내용 요약

- 납세자의 MAP 이용 가능성과 접근가능성 보장

¹ BEPS 방지 다자협약은 조세조약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존의 양자조약 개정 대신 다자 간 협정 체계로 도입된 것

²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과세소득의 조정에 대하여 각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계약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 사이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June 22nd,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납세자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최초 통보로부터 2~3년 이내 MAP신청 가능. 다만, 조세조약 별로 이의제기 기한은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24개월 내 MAP 사안 해결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사안의 해결은 평균 24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

■ MAP 합의 이행

상호합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국내 세법상 부과척기간과 관계없이 이행하도록 규정(상호합의 이행의 적시성)

■ 기타

납세자가 공개해야 하는 정보, 납세자 또는 관할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의 내용과 MAP 신청방법 및 단계별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됨

■ 제한사항

소득세 평가법 1936(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의 적용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MAP 통한 이중과세 해소 불가

강제중재 규정

호주는 국가간 MAP이 개시된 지 2~3년 이내에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납세자가 요청 시 제3의 중재기구가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강제중재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호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이미 두 개의 조세조약에는 강제중재 규정이 반영되어 있으며 앞으로 다자간 협약에 따라 강제중재 규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되는 조약은 16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 규정은 앞으로 MAP에 대한 납세자 접근성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잡한 국제조세 문제 발생 시 MAP 절차를 통해 과거보다 효과적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Saudi Arabia: Transfer pricing guidelines \(second edition\)](#)

사우디아라비아: 이전가격 지침서 2차 개정본 발표

June 5, 2020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General Authority of Zakat and Tax, 이하 "GAZT")은 2020년 6월 1일 이전가격 지침서 2차 개정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이전가격 지침서는 지난 2019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본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이전가격 지침서 2차 개정본 주요 내용 요약]

1. 주요 용어 해설 추가

■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수익적 소유자"란 기업의 자금을 소유 및 관리 또는 거래 활동 등의 법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소득의 실질귀속자)을 의미함

■ 무형자산의 사실상 소유권자(De facto owner of intangibles)

무형자산의 사실상 소유권자란 무형자산의 개발, 유지, 향상, 보호 그리고 활용(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and Exploitation, 이하 "DEMPE")에 중요한 가치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관련된 위험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며 실제로 그 위험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즉, 실질적인 무형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자를 의미함. (다만,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자와 경제적 소유권자는 다를 수 있음)

■ 그룹(Group)

특수관계에 있는 2개 또는 그 이상의 기업이 재무자료 공시 목적상 회계원칙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구비의무가 부과되거나 해당 기업의 지분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경우 "그룹"이라고 칭함

2. 기타 개정 이전가격 지침 주요 사항

■ 독립기업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적용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국외특수관계인과 수행한 모든 이전가격 거래는 독립기업원칙에 의거한 정상가격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함

■ 납세자에게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실질적인 특수관계에 대한 판단 및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등 납세자가 특수관계 존부에 대하여 입증하도록 규정함

■ 세무조사 및 그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근거법인 소득세법(Income tax law)을 준용하도록 규정

■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ing, CbCR) 이행 관련 추가 지침 제시

아래와 같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함.

- 제출의무자: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직전연도 연결 매출액이 32억 SAR (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기존과 동일)

- 제출기한: 다국적기업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과 동일)
- 적용시기: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존과 동일)
- 제출방법: 웹 포털을 통해 제출 가능 (등록 절차는 2차 개정본 부록 참조) (신규 추가)
- 기존 규정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현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자회사가 32억 SAR (약 1조원)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었으나 2차 개정본에서는 최종 모회사가 현지에서의 제출의무가 없을 시, 사우디아라비아 자회사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제출의무를 면제 (신규 추가)
 - 이전가격 신고서식(TP Disclosure Form)의 제출기한 명확화

이전가격 신고서식은 매년 법인세 세무신고 시 함께 신고되어야 함 (회계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통상 4월말까지 제출)

Russia: Draft legislative amendments to revise APA measures

러시아: APA 개정을 위한 이전가격 법률 개정안 초안 공개

May 14, 2020

2020년 3월 러시아 재무부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의 절차 단순화, 러시아 과세목적 상 특수관계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요건 명확화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신규 이전가격 법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2020년 중 채택되어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APA 행정절차 개정안 주요 내용

■ 이전가격방법론

상대 국가의 법규에 따라 선정된 이전가격결정방법론이 러시아의 이전가격결정방법과 비교가능 시, 쌍방 APA를 신청한 납세자가 상대국의 이전가격방법론을 명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일방APA Option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에 어려움 예상 시, 일방 APA 추진 가능

■ 세무조사 유예

APA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상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

■ APA 진행절차 개선

기존: APA 신청서와 더불어 관련 자료들이 모두 제출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식 신청일 산정

개정안: APA 신청서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정식 신청일 산정

■ 자료제출 부담 경감

과세당국이 기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중복제출 불필요

■ APA 승인 철회 또는 취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APA 승인이 취소되거나 철회될 수 있음

- 상대국 과세관청과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 납세자가 자료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
- 납세자가 APA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가 과세당국 간의 합의사항에 동의하지 않고, APA 합의문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 APA와 세무조사 관계

APA관련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조사대상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될 예정임

■ APA의 공식적 검토 기간

APA 검토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4개월(최장 27개월까지 연장 가능). 다만, 상호합의(MAP)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음

■ 추가 요청자료 제출 기한

- 러시아 과세당국(FTS) 요청자료: APA관련 추가 요청자료는 1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출되어야 함
- 납세자 요청자료: APA 수정안 및 관련 자료는 납세자 요청일로부터 3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공되어야 함

■ 기타

납세자는 타방국가 납세자가 APA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국 국세청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해야함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